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2016년 귀속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공시의 건

본 재단의 2016년 귀속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공시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보고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### 1. 공익법인 결산공시 관련 근거

-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
  - ① 공익법인등(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류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    - 1. 대차대조표
    - 2. 손익계산서(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)
    - 3.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
    - 4.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, 이사, 출연자,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
    - 5.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첨 부
- 1.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부
  - 2.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1부
  - 3. 주식등의 출연, 취득, 보유 및 처분명세서 1부
  - 4.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부
  - 5.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1부
  - 6. 대차대조표 1부
  - 7. 손익계산서 1부
  - 8.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접수증 1부. 끝.

##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담당

박소연

사무국장

전결  
송연숙

협조자

시행 서울장학재단-273 ( 2017. 4. 28 ) 접수 ( )

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, 304(운니동,가든타워) / <http://www.hissf.or.kr>

전화 070-8667-3506 /전송 070-4133-2258 / [soy0503@naver.com](mailto:soy0503@naver.com) / 부분공개(5)